

# 中小企業金融과 信用保證에 관한 小考

姜 文 秀

▷ 目 次 ◁

- I. 序 論
- II. 企業의 資金調達構造와 中小企業金融의 行態
- III. 中小企業 信用保證制度의 機能과 問題點
- IV. 結 論

## I. 序 論

### 1. 經濟環境의 變化와 中小企業의 役割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급속한 經濟成長을 成就하는 經濟開發過程에서 規模의 經濟가 지

筆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 筆者는 本研究의 資料를 提供하여 준 韓國銀行, 信用保證基金 및 中小企業銀行 關係者들에 感謝하며 또한 本稿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하여 준 金重雄, 盧成泰, 朴俊卿 博士, 資料處理과 原稿整理를 하여 준 朴尙範 主任研究員, 徐貞子, 許永鍾 研究員에게 感謝를 표한다. 그러나 本稿에 提示된 見解나 어떠한 誤謬도 全的으로 筆者의 責任임을 밝혀 둔다.

니는 利點을 활용하기 위하여 企業의 대형화 가 重視됨에 따라 中小企業의 發展은 大企業에 比하여 상대적으로 落後되었으며 中小企業의 國民經濟上의 比重도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70年代末 이후 世界經濟의 沈滯와 技術革新 등으로 產業構造調整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轉換期에 들어서 양성한 適應力과 轉換能力을 가진 中小企業의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役割 및 機能이 새로운 觀點에서 強調되었다.

「불튼」委員會(The Committee of Inquiry on Small Firms)의 報告에 의하면 中小企業은 經濟活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遂行하고 있다. 즉 ① 企業心과 獨立精神이 풍부한 사람들에 대하여 강력한 에너지를 生産的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길을 提供한다. ② 最適規模의 面에서 中小企業이 效率的인 產業分野가 많이 존재한다. ③ 中小企業의 존재에 의하여 보다 많은 商品과 서비스의 提供이 가능하다. ④ 大企業에 대한 專門的인 部品の 供給者로서 重要하다. ⑤ 大企業의 獨占을 防止하고 效率的인 經濟體制의 運用에 貢獻하고 있다.

⑥ 中小企業은 市場의 動向에 機動的으로 反應하여 市場性과 將來性이 不確實한 技術과 商品에 對해서 進取的인 氣質을 가지고 挑戰함으로써 技術革新과 新商品開發을 擔當한다.

⑦ 새로운 産業을 誕生시키는 苗床(seedbed)의 役割을 遂行한다. ⑧ 企業家的 才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對해서 個人이 事業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한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需要의 多樣化, 個性化 및 서비스 需要의 증가 등 中小企業이 成長·發展하여 갈 可能性이 있는 分野가 擴大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機會에 適應해 가기 위해서는 企業의 全力 投球와 自助努力이 必要함과 동시에 그 過程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關係機關의 뒷받침이 종래보다 더욱 要請되는 時代에 들어서고 있다. 最近에 美國, 英國, 프랑스, 日本 등 先進諸國은 물론 臺灣과 같은 新興工業國家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中小企業의 役割, 특히 新技術의 開發과 雇傭의 安定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役割과 機能을 活用하기 위하여 中小企業에 對한 財政, 稅制 및 金融支援 등을 擴大, 強化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0年代에 들어서 政策當局

이 그동안의 經濟發展過程에서 派生된 우리나라 經濟構造의 不均衡을 是正하고 國民經濟의 體質을 改善함으로써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뒷받침할 수 있는 基盤을 確立하기 위하여 經濟構造調整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한편 1983年 末 현재 中小企業의 比重은 事業體數에 있어서는 97.4%나 되나 從業員數(54.8%), 生産額(34.7%) 및 附加價值額(37.2%)에 있어서는 主要諸國, 특히 日本과 臺灣에 비하여 크게 뒤지고 있다(表 1 참조). 더구나 1982年 鑛工業統計 및 中小企業實態調查資料에 의하면 從業員 50人미만의 小規模企業이 全體中小企業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企業形態別로는 個人企業이 全體中小企業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規模의 零細性과 前近代的인 企業形態가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特性으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經濟構造를 調整하는 데 있어서 多角的인 支援施策을 活用하는 積極적인 中小企業의 育成이 重要하다 하겠다.

産業政策面에서 政府는 「中小企業振興法」을 制定하여 中小企業振興公團을 設立하는 한편 中小企業의 事業領域의 保護와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系列化 促進, 有望中小企業의 發掘·

〈表 1〉 國別 中小企業의 地位(製造業)

(단위 : %)

	韓國(1983)	日本(1983)	臺灣(1981)	美國(1977)	英國(1981)	西獨(1970)
中小企業分類基準 <sup>1)</sup>	300人 以下	300人 以下	300人 以下	249人 以下	499人 以下	499人 以下
事業體數	97.4 <sup>2)</sup>	99.2	99.0	96.0	98.3	99.4
從業員數	54.8	72.2	74.0	43.4	50.1	50.0
出荷額	34.7 <sup>3)</sup>	51.8	92.8	36.6	..	45.8
附加價值額	37.2	56.1	56.0	36.3	45.4 <sup>4)</sup>	44.1

註: 1) 從業員數 基準

2) 4人以下 業體는 除外

3) 生産額 基準

4) 99人以下에 對해서는 資料 없음

資料: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現況』, 1984.

中小企業振興公團, 『中小企業經濟指標』, 1985.

日本中小企業廳, 『中小企業白書』, 1985.

育成 등을 위한 諸般施策을 통하여 中小企業 支援政策을 강화하고 있다. 中小企業을 支援하기 위한 金融政策도 大企業에 대한 與信偏重을 止揚함으로써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支援을 擴大하는 등 中小企業支援金融制度를 꾸준히 擴充해 오고 있다. 앞으로 金融政策에 있어서 量的인 面만이 아니라 質的인 轉換을 행할 必要性이 從來보다 더 커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0年代에 들어서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하여 金融支援施策이 강화되고 있는바 本稿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實態를 預金銀行의 貸出을 중심으로 點檢하고 앞으로 中小企業金融의 效率化와 發展을 위한 方案을 摸索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이 當面하는 問題를 살펴보고 第Ⅱ章에서 企業의 資金調達構造와 問題點 및 中小企業金融의 行態를 分析한 후 第Ⅲ章에서는 信用保證制度의 運用과 問題點 등을 檢討하고 第Ⅳ章에서는 中小企業金融과 信用保證制度의 發展을 위한 提言을 하고자 한다.

## 2. 中小企業金融 問題의 本質

中小企業金融의 問題는 基本的으로 中小企業이 大企業에 비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 및 어음割引 등 資金調達에 있어서 불리한 立場에 있다는 점에 緣由하고 있으며 「월슨」 委員會도<sup>1)</sup> 이와 같은 中小企業들의 金融難을 強調하고 있다. 물론 모든 中小企業이 金融難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金融의

緩和와 緊縮에 따라 그 金融難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金融難을 呼訴하는 中小企業들이 언제나 적지 않다는 사실을 否定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첫째로, 中小企業은 필요한 資金을 確保하는데 大企業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즉 ① 一般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이 곤란하고 ② 資本市場에서 社債 및 株式의 發行이 어려우며 ③ 社內利益留保, 減價償却充當金 등 內部資金의 蓄積이 불충분하다. 둘째로, 中小企業의 資金調達에 있어서 諸般條件이 大企業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다. 즉 ① 借入金利率이 높고 融資期限이 短期인 傾向이 있으며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條件이 엄격하다. ② 企業間 信用을 통하여 資金을 調達하는 경우에 그 費用이 크다. 셋째로, 中小企業에 있어서 資金調達の 難易度는 金融事情의 變化에 따라 大企業의 경우보다 더 敏感하게 變動한다.

中小企業이 資金調達에서 當面하는 이와 같은 不利性은 中小企業의 本質, 資金需要의 性格 및 金融機關의 資金供給에 관련되는 諸要因 등에 基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中小企業의 信用力이 약하여 金融機關이 提示하는 貸出條件(金利率, 保證人, 擔保 등)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고 ② 실제로는 그 中小企業의 成長潛在力이 있으나 金融機關이 가지고 있는 그 企業에 관한 情報不足으로 인해 精確한 評價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③ 金融緊縮時에나 또는 資金需要가 旺盛하여 資金供給能力을 크게 상회할 때에는 金融機關은 이제까지 去來關係가 깊은 企業(주로 大企業)에 우선적으로 資金을 割當하고 그 이외의 企業(中小企業)에 대한 貸

1) "The Financing of Small Firms," *Interim Report of the Committee to Review the Function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Cmnd 7503 HMSO, 1979.

출은 量的으로 制限하거나 제의하는 경우가 있다.

中小企業의 資金難은 평상시에도 발생하지만 특히 金融緊縮期, 不況期, 産業構造의 變化期 등에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時期에는 中小企業의 不安定性이 증대하기 쉽고, 관련된 情報도 충분히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金融機關은 與信에 있어서 平상시보다 더욱 신중하게 된다<sup>2)</sup>. 이러한 狀況에서는 ① 小零細企業 ② 新設企業 ③ 不況業種에 속하는 企業 ④ 急成長産業에 속하고 財務構成이 不健全한 企業 ⑤ 技術開發指向型 企業 ⑥ 事業轉換企業 ⑦ 大型投資가 필요한 企業 등과 같이 金融機關側의 立場에서 보아 危險度(risk)가 높은 中小企業들은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이와 같은 中小企業의 경우 採算性和 安定性的의 原則에 입각하여 運營하는 一般商業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中小企業의 金融問題를 단순히 金融市場의 「메카니즘」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中小企業이 資金調達上 당면하는 不利性을 是正하지 않으면 결국 中小企業은 部分的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金融上 불리한 立場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성을 補正하여 주는 것이 中小企業金融政策의 課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 中小企業基本法(第25條)은 中小企業金融의 원활화를 圖謀하기 위한 財政 및 金融資金의 供給增大, 專擔金融機關의 機能強化, 外資導入 등에 관한 施策,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의 條件을 改善하고 信用保證制度를 確立하기 위한 施策 그리고

中小企業金融이 中小企業施策에 따라 행해지도록 金融機關을 指導하는 데 필요한 施策을 政府가 講究하여 실시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sup>3)</sup>.

## II. 企業의 資金調達構造와 中小企業金融의 行態

### 1. 企業의 資金調達構造와 問題點

企業의 資金調達方法은 大別하여 內部金融(internal financing)과 外部金融(external financing)의 두 가지 形態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內部金融은 利益의 社內留保와 減價償却充當金 등을 통하여 企業內部로부터 資金을 自體調達하는 方式이며, 外部金融은 金融去來를 통하여 企業의 外部로부터 資金을 調達하는 方式이다.

企業의 資金調達에 있어서 높은 內部金融의 比重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事業의 機會가 커지게 되면 外部로부터 資金을 導入하여 事業規模를 擴大하고자 하는 經營者가 많아지게 되며 또한 短期間에 事業의 轉換을 도모하는 경우에도 外部資金을 導入하게 된다.

우리나라 企業들의 資金調達構造를 살펴보면 總資金調達額 중에서 內部金融이 차지하는 比重은 1979~81年 期間中 平均 19.9%에 불과한 반면에 外部資金이 平均 80.1%의 압도적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表 2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의 主要原因은 資本市場의 未發達과 政府의 급속한 高度成長政策 때문에 企業의 自己資本 蓄積의 시간이 없는 가운데 間接金融에 의한 企業成長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2) 趙觀行, 『現代中小企業論』, 에코노미아, 1984, pp. 181~183.

3) 上掲書, p. 185.

그러나 1982年 이후 企業의 社內貯蓄增大에 힘입어 社內留保金과 減價償却充當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82~83年中에는 內部金融의 比重이 37.1%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金利引下와 賃金上昇率 鈍化, 그리고 出荷好調 등으로 인하여 企業의 經營收支가 改善된 데다가 企業의 社內留保의 增大를 圖謀하기 위한 政府의 政策的 誘導에 따라 企業의 配當率이 낮게 策定된 데 基因한 것이다.

1982~83年中 大企業의 外部로부터의 資金 調達內譯을 보면 金融緊縮의 影響을 받아 償還期間이 비교적 短期인 銀行借入金의 比重이 크게 低下하고 특히 企業의 設備投資의 低調로 長期借入金의 比重이 급격히 下落하였다. 그러나 활발한 有償増資와 政府의 잇따른 改善措置에 힘입은 會社債發行의 急増에 따라 安定的 長期資金調達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大企

業의 資金調達構造는 크게 改善되었다.

中小企業의 資金調達構造에 있어서도 內部金融의 比重이 1979~81年 期間中の 平均 17.3%에서 1982~83年 期間中에는 28.4%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製造業平均 比重 37.1%나 大企業의 內部資金比重 38.6%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는 中小企業의 社內留保와 減價償却充當金이 大企業에 비하여 低調한 데 基因한다. 이에 따라 中小企業은 外部資金에 크게 依存하게 되어 그 外部資金依存度는 1982~83年 期間中 71.6%로 大企業의 外部資金依存度 61.5%보다 크게 높다. 이러한 中小企業의 外部資金調達을 보면 中小企業은 外部資金의 대부분을 銀行 등의 金融機關借入과 企業間信用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直接金融手段인 會社債發行에 의한 資金調達比率은 大企業에 비하여 매우 低調하다. 이는 會社債發行에

〈表 2〉 法人企業의 資金調達 構成比 推移(1979~83)

	(단위 : %)					
	製 造 業		大 企 業		中 小 企 業	
	1979~81	1982~83	1979~81	1982~83	1979~81	1982~83
1. 內 部 金 融	19.9	37.1	20.7	38.6	17.3	28.4
內 部 留 保	1.1	8.8	0.7	9.5	4.2	4.7
減 價 償 却	16.5	24.7	17.8	25.3	11.1	20.7
充 當 金	2.3	3.7	2.4	3.8	2.0	3.1
2. 外 部 金 融	80.1	62.9	79.3	61.5	82.7	71.6
가. 直 接 金 融	10.6	18.1	10.7	18.8	9.9	13.9
増 資	7.1	6.8	6.9	6.5	8.9	9.0
社 債	3.5	11.3	3.8	12.4	1.0	5.0
나. 間 接 金 融	33.7	17.2	33.0	15.5	38.7	26.7
銀行借入金	25.6	11.4	24.7	9.9	30.0	20.1
(長期)	(11.0)	(2.4)	(10.0)	(2.9)	(16.7)	(△0.5)
其他借入金	8.1	5.8	8.3	5.6	8.7	6.6
다. 外 國 借 款	3.4	△2.4	3.7	△3.0	0.1	0.9
라. 企 業 間 信 用	14.4	13.4	12.8	12.0	21.2	21.4
마. 其 他	18.0	16.8	19.1	18.2	13.3	8.8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있어서 中小企業이 당면하는 安定性, 擔保力, 資本金 및 準備金規模 등으로 인한 發行資格 制限과 發行限度制約 등에 基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中小企業의 金融機關借入中에서 設備投資를 위한 長期借入은 최근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金融機關借入은 短期運營資金의 融通을 위한 借入爲主로 運用되고 있다. 이로 인한 中小企業의 設備投資의 부진은 장기적으로 中小企業의 生産設備의 擴充 및 生産性向上에 대하여 障礙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것이다.

한편 先進諸國에 있어서 企業의 資金調達을 살펴보면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西獨과 日本의 경우 1978~82年의 期間中 減價償却充當金を 중심으로 한 自己資金이 總資金調達の

74~86%, 그리고 美國의 경우 이보다 낮은 59%를 차지하여 自己資金의 比重이 壓倒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企業의 資金調達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自己資金에 의한 資金調達은 總額의 33.8%에 불과하고 借入金을 비롯한 他人資金의 比重이 무려 66.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企業의 資金調達에 있어서 減價償却充當金과 內部留保에 의한 資金調達が 西獨, 日本, 美國 등에 비하여 매우 低調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他人資金依存度는 우리나라 企業의 財務構造가 脆弱하고 企業의 장기적 安定性이 虛弱함을 示唆해 주고 있다.

## 2. 中小企業金融의 行態分析

<表 3> 各國企業 資金調達 構成比  
(製造業, 1978~82 平均)

(단위 : %)

	韓國 <sup>1)</sup>	美國	西獨	日本
1. 自己資金	33.8	59.3	85.6	74.1
內部留保 <sup>2)</sup>	7.1	20.9	27.9	18.1
減價償却	19.8	32.9	53.5	44.5
株式	7.0	5.4	4.1	11.5
2. 他人資金	66.2	40.7	14.4	25.9
社債	6.6	9.2	-2.2	2.4
借入金	27.1	8.0	3.0	4.8
其他 <sup>3)</sup>	32.5	23.5	9.2	18.7
計	100.0	100.0	100.0	100.0

註 : 1) 1979~83年 平均

2) 內部留保는 充當金を 包含

3) 其他는 企業間信用, 有價證券 등을 包含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日本銀行, 『國際比較統計』, 1984. 6.

4) W.L. Silber and Polakoff, M.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ight Money: An Econometric Study", *The Journal of Finance*, March 1970.

5) 貝塚啓明・小野寺弘夫, 「信用割當について」, 『經濟研究』, 第25卷 第1號, 1974.

6) G.L. Bach and Huizenga,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ight Mone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1.

우리나라의 金融市場은 資金의 慢性的 超過需要라는 不完全競爭狀態를 그 特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貸出市場에 있어서 金利는 資金需給事情을 충분히 考慮하여 價格決定 「메카니즘」에 따라 自律的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대부분 通貨當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어떠한 形態로든지 信用割當(credit rationing)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Silber와 Polakoff<sup>4)</sup>(1970), 貝塚啓明・小野寺弘夫<sup>5)</sup>(1974)는 信用割當에 있어서 貸出에 따른 危險度(default risk)가 높은 中小企業은 金融緊縮期에 「인플레이션」壓력을 완화하기 위한 信用割當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 반면 Bach와 Huizenga<sup>6)</sup>(1961)는 銀行이 金融緊縮期에 貸出에 있어서 中小企業에 대하여 차별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見解를 披瀝하였다.

아무쪼록 中小企業에 대한 銀行貸出比率의

變化는 資金供給에 있어서 企業의 規模에 따른 差別的 取扱을 나타내는 指標가 될 수 있다<sup>7)</sup>. 특히 銀行貸出金利가 韓國銀行의 最高利率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企業信用의 危險度가 높고 그 결과 貸出金利가 높은 中小零細企業에 대하여 量的 制約이 보다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中小企業에 대한 銀行貸出比率의 움직임을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中小企業이란 金融機關 與信運用規定上 中小企業金融의 대상이 되는 中小企業, 즉 中小企業基本法上的 中小企業外에 常時従業員數 300人以下의 農林水產業者 및 電氣·가스·水道業者를 포함한다.

〈表 4〉와 [圖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市中銀行의 總貸出殘額中에서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殘額이 차지하는 比率은 高成長을 記錄하였던 1973년에는 30.4%에 이르렀으나 1973年末의 石油波動으로 인하여 景氣不況을 겪었던 1975년에는 18.7%로 급격히 下落하였다. 1974~75년의 景氣沈滯期 이후 金融政策當局의 積極적인 中小企業金融支援體制의 擴充<sup>8)</sup>에 크게 힘입어 同比率은 지속적인 上昇傾向을 보여 1979년에 비로소 1973년의 수준을 回復하였고 나아가 1984年末에는 33.7%를 記錄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에는 景氣循環局面에서 市中銀行貸出에 있어서 中小企業에 대한 差別的 取扱의 可能性 與否를 檢討하기 위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增減額이 大企業을 포함하는 總貸出增減

〈表 4〉 市中銀行의 中小企業貸出比率

(단위: 億원, %)

	總貸出殘額(1)	中小企業貸出殘額(2)	總貸出增減(3)	中小企業貸出增減(4)	殘額基準(2)/(1)	增減額基準(4)/(3)
1 9 6 9	3,445	1,080	—	—	31.3	—
1 9 7 0	4,150	1,332	705	252	32.1	35.7
1 9 7 1	5,235	1,579	1,085	247	30.2	22.8
1 9 7 2	6,690	1,974	1,455	395	29.5	27.1
1 9 7 3	8,657	2,633	1,967	659	30.4	33.5
1 9 7 4	13,267	3,911	4,610	1,278	29.5	27.7
1 9 7 5	15,216	2,849	1,949	-1,062	18.7	-54.5
1 9 7 6	18,618	4,981	3,402	2,132	26.8	62.7
1 9 7 7	22,425	6,323	3,807	1,342	28.2	35.3
1 9 7 8	30,152	9,086	7,727	2,763	30.1	35.8
1 9 7 9	43,902	13,580	13,750	4,494	30.9	32.7
1 9 8 0	56,679	17,820	12,777	4,240	31.4	33.2
1 9 8 1	74,298	24,288	17,619	6,468	32.7	36.7
1 9 8 2	102,570	33,161	28,272	8,873	32.3	31.4
1 9 8 3	121,204	40,516	18,634	7,355	33.4	39.5
1 9 8 4	137,603	46,334	16,399	5,818	33.7	35.5

註: 1) 1982년에는 同年度에 신설된 新韓銀行은 除外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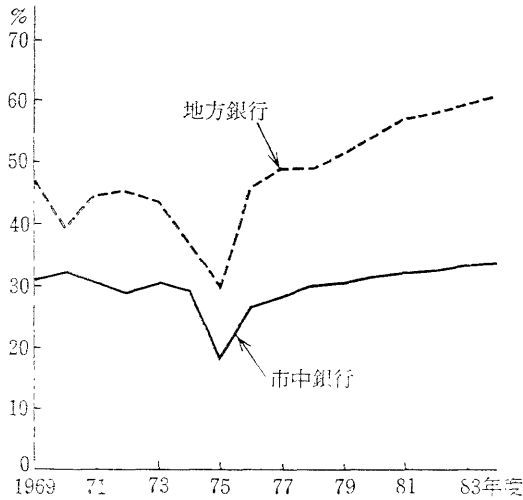
2) 1982~84년에는 外換銀行이 포함됨.

資料: 중소기업은행, 『연차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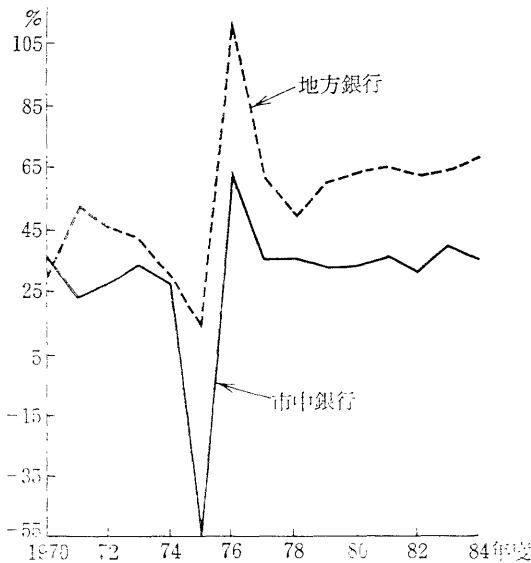
7) 岩田一政·洪田宏一, 『金融政策と銀行行動』, 東洋經濟新報社, 1980.

8)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금융제도(2)」, 『주간내외경제』, 1984. 11.

[圖 1] 中小企業貸出比率(殘額基準)



[圖 2] 中小企業貸出比率(增減額基準)



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의 推移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增減額은 統計資料의 制約으로 인하여 年中 貸出償還額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當期の 貸出殘額에서 前期의 貸出殘額을 差減한 數値로서 年中 純增加額을 나타낸다. <表 4>와 [圖 2]에 의하면 1969年末부터 1971年初까지 安定化政策의 一環으로 金融

緊縮政策이 취해짐에 따라 1971年中에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比率(增減額基準)은 下落하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金融緩和를 포함한 8.3 措置라는 강력한 景氣浮揚策이 실시된 1972년에는 同貸出比率이 上昇하기 시작하였다. 資源波動에 따른 景氣不況이 시작된 1974년에는 同比率은 다시 下落하기 시작하여 특히 不況의 底點인 1975년에는 通貨當局이 金融緊縮基調를 堅持함에 따라 中小企業貸出殘額이 減少하였으며 同比率은 -54.5%를 記錄하였다. 그러나 1976年中 内外景氣回復에 따른 高度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通貨供給을 擴大하는 등 金融緩和政策이 취해지고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同比率은 62.7%로 대폭 上昇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金融緊縮政策이 시작되면 中小企業의 資金需要가 大企業의 資金需要에 비하여 크게 減退한다고 하는 資金需要面에서의 非對稱性이 존재하지 않는 한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에 量的 制約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指標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76年 韓國銀行은 1965년부터 市中銀行을 비롯한 一般銀行에 권장하여 은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比率을 종래의 總貸出金の 30% 이상에서 總貸出金 增加額의 30% 이상(市中銀行의 경우)과 40% 이상(地方銀行의 경우)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同比率을 義務의으로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어 1980년에 韓國銀行은 一般銀行에 대하여 賦課된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比率을 貸出增加額의 35%(市中銀行의 경우)와 55%(地方銀行의 경우)로 각각 提高시킴으로써 中小企業을 支援하기 위한 選別的 金融政策手段을 강화하였다. 또한 1982年 7月 韓國



銀行은 金融機關의 中小企業에 대한 적극적인 資金支援을 誘導하기 위하여 金融機關의 中小企業貸出에 대하여 資金을 支援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金融機關의 中小企業貸出義務比率의 履行實績에 따라 差等支援하고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은 中小企業을 위한 選別的 金融政策의 실시와 1980年 이후의 經濟安定化 施策 등에 힘입어 市中銀行의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比率은 巨額어음不渡事件 등의 餘波가 컸던 1982年을 제외하고는 1977年 이후 33~40%의 범위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堅持하고 있다.

이상은 市中銀行의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의 行態에 관한 分析이지만 <表 5>와 [圖 1] 및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地方銀行에서도 거의 비슷한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中小企業金融에 있어서 中小企業에 많은 量의 資金이 供給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中小企業이 원하는 資金을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資金이 適期에 供給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안정적인 資金의 供給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銀行 특히 市中銀行은 一般中小企業을 限界的 貸出對象으로 취급하는 傾向이 없지 않은 것 같다. 限界的 貸出對象이란 市中資金事情이 좋은 金融緩和期에는 貸出을 받을 수 있으나 金融緊縮期에는 資金事情이 어려울 경우 그 貸出額이 削減되거나 또한 借換을 拒絶당하게 되는 貸出先을 意味한다.

이러한 傾向은 70年代末 이후 中小企業을 支援하기 위한 選別的 金融政策이 강화되면서부터 다소 是正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아직도 근본적으로 消滅된 것 같지는 않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檢證하기 위하여 우리는 <表 6>에서 지난 1971년부터 1984년까지 預金銀行의 貸出先別 貸出增加額의 構成比率의 推移를 銀行 貸出에 관한 統計資料의 制約으로 인하여 中

<表 5> 地方銀行의 中小企業貸出比率

(단위: 億원, %)

	總貸出 殘額(1)	中小企業 貸出 殘額(2)	總貸出 增減(3)	中小企業 貸出 增減(4)	殘額基準 (2)/(1)	增減額 基準 (4)/(3)
1 9 6 9	120	56	—	—	46.7	—
1 9 7 0	220	86	100	30	39.1	30.0
1 9 7 1	371	165	151	79	44.5	52.3
1 9 7 2	594	268	223	103	45.1	46.2
1 9 7 3	1,019	446	425	178	43.8	41.9
1 9 7 4	1,956	723	937	277	37.0	29.6
1 9 7 5	2,776	840	820	117	30.3	14.3
1 9 7 6	3,461	1,596	685	756	46.1	110.4
1 9 7 7	4,176	2,045	715	449	49.0	62.8
1 9 7 8	5,530	2,730	1,354	685	49.4	50.6
1 9 7 9	7,168	3,718	1,638	988	51.9	60.3
1 9 8 0	9,264	5,044	2,096	1,326	54.4	63.3
1 9 8 1	12,679	7,232	3,415	2,188	57.0	64.1
1 9 8 2	16,033	9,306	3,354	2,074	58.0	61.8
1 9 8 3	19,270	11,378	3,237	2,072	59.0	64.0
1 9 8 4	24,197	14,717	4,927	3,339	60.8	67.8

資料: 중소기업은행, 『연차보고서』 각년도.

小企業에 대한 貸出과 大企業 및 個人에 대한 貸出로 兩分하여 分期資料를 이용하여 살펴 보았다. <表 6>에 나타난 預金銀行의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比率(增減額基準)의 變動은 中小企業에 대한 預金銀行貸出의 不安定性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一般銀行이 中小企業을 限界的 貸出對象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消滅되지 않고 常存하고 있음을 示唆하여 주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일반적으로 말하면 銀行의 大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은 大企業의 資金需要에 對應하여 행하여지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하여 一般中小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은 銀行의 金融事情과 通貨政策當局의 中小企業을 支援하기 위한 選別的 金融政策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中小企業의 資金調達上 상

대적인 不利, 즉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外部 資金調達上의 隔差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金融緊縮期에는 銀行의 中小企業貸出이 불안정함을 살펴 보았다. 中小企業이 外部資金調達에 있어서 당면하는 중요한 障礙는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이 危險도가 높은 반면 中小企業에는 適切한 擔保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中小企業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信用力を 補強해 주는 制度가 바로 信用保證制度인바 다음 章에서 信用保證制度의 運用과 問題點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表 6> 預金銀行의 企業規模別 貸出增減額의 構成比率

(단위: %)

	中 小 企業貸出	大企業및 其他貸出		中 小 企業貸出	大企業및 其他貸出		中 小 企業貸出	大企業및 其他貸出
1971 1/4	16.9	83.1	4/4	-379.9	479.9	3/4	17.1	82.9
2/4	15.7	84.3	1976 1/4	11.5	88.5	4/4	34.3	65.7
3/4	28.7	71.3	2/4	31.8	68.2	1981 1/4	34.3	65.7
4/4	42.6	57.4	3/4	20.5	79.5	2/4	32.7	67.3
1972 1/4	33.2	66.8	4/4	83.0	17.0	3/4	42.6	57.4
2/4	22.8	77.2	1977 1/4	55.7	44.3	4/4	41.7	58.3
3/4	35.7	64.3	2/4	20.6	79.4	1982 1/4	17.0	83.0
4/4	42.6	57.4	3/4	21.7	78.3	2/4	-9.9	109.9
1973 1/4	32.2	67.8	4/4	130.0	-30.0	3/4	7.4	92.6
2/4	69.4	30.6	1978 1/4	23.5	76.5	4/4	32.0	68.0
3/4	12.9	87.1	2/4	13.1	86.9	1983 1/4	28.5	71.5
4/4	40.9	59.1	3/4	32.9	67.1	2/4	61.1	38.9
1974 1/4	24.6	75.4	4/4	41.8	58.2	3/4	29.8	70.2
2/4	25.2	74.8	1979 1/4	40.8	59.2	4/4	30.7	69.3
3/4	26.3	73.7	2/4	42.4	57.6	1984 1/4	27.9	72.1
4/4	-32.1	132.1	3/4	28.9	71.1	2/4	24.1	75.9
1975 1/4	203.9	-103.9	4/4	36.9	63.1	3/4	28.3	71.7
2/4	51.5	48.5	1980 1/4	39.3	60.7	4/4	84.5	15.5
3/4	25.4	74.6	2/4	33.8	66.2			

### Ⅲ. 中小企業 信用保證制度的 機能과 問題點

#### 1. 信用保證制度的 機能

信用保證制度는 一般金融과 政策金融의 中間에 위치하는 制度라고 말할 수 있다<sup>9)</sup>. 資金調達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相對的인 不利, 소위 「맥밀란 갭」(Macmillan gap) 또는 金融隔差(financial gap)를 解消하여 주는 것이 바로 政策金融이다. 中小企業金融에 이와 같은 金融隔差가 발생하는 데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 理由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에 따르는 危險度(risk)가 大企業에 대한 貸出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民間金融機關의 貸出審査基準에 비교적 適合하지 않다. 둘째, 銀行 특히 市中銀行들은 大企業들에 대한 貸出에 偏重한 결과 貸出의 危險度에 관계 없이 中小企業에 供給할 餘裕資金을 그다지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中小企業 政策金融에 있어서는 中小企業分野에 대한 資金流入을 極大化하는 데에 政策의 重點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資金에 대하여 超過需要가 常存하는 金融基調下에서는 그와 같은 政策에 그 나름대로의 理由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安定的 低成長時代로 移行하여 金融市場의 資金需給事情이 完化되고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

에 따르는 危險을 制度的으로 補完하여 주는 制度가 效率的으로 運用되게 되면 政策當局이 巨額의 政策金融資金을 직접 供給하지 않더라도 보다 많은 民間資金이 中小企業分野에 流入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이와 같은 機能을 遂行하는 것이 바로 中小企業信用補完制度이며 同制度는 信用保證과 信用保險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信用保證基金이 信用保證業務를 취급하고 있으나 信用保險은 아직 實施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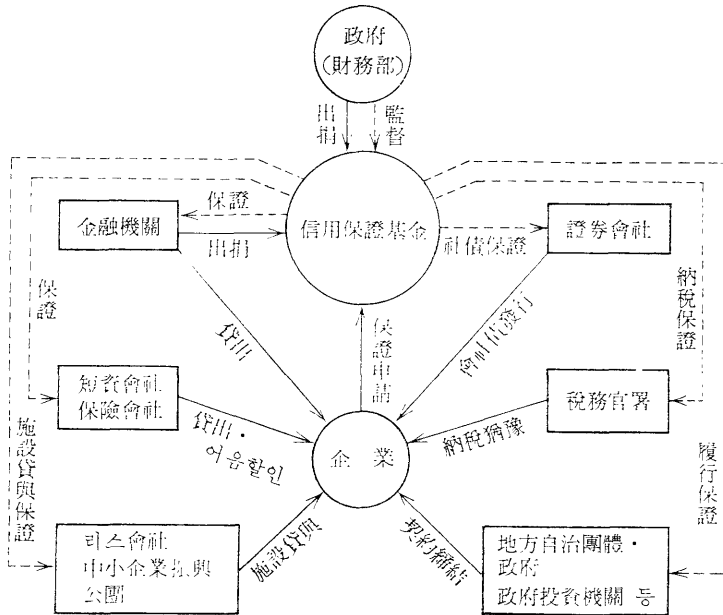
政策金融을 위한 財源調達에 制約이 있는 이상 中小企業에 대한 政策金融을 無制限 擴大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또한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中小企業에 資金을 供給하는 데 있어서 보다 效率的인 方法이 講究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한 資金供給手段으로서 信用補完制度를 再檢討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信用保證은 對象企業에 대하여 信用保證基金 基本財産의 數倍의 保證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政府系 金融機關의 直接貸出에 비해서 資金을 보다 有効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信用保證制度를 이용함으로써 中小企業金融에 關連된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政策金融과 信用保證制度를 적절히 調和하여 運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信用保證制度는 1961年 中小企業銀行의 設立과 함께 導入되어 運用되었다. 1967年 「中小企業信用保證法」의 制定에 따라 信用保證의 對象은 全金融機關의 中小企業貸出로 擴大되었으며 中小企業銀行의 信用保證準備金과 政府의 出捐金을 財源으로 하여 信用保證基金이 中小企業銀行內에 設置되었다. 이어 1972年 「8.3 緊急措置」에 따라 信用保證

9) 山下邦男, 『中小企業金融の方向と政策』; 加藤誠一・水野武・小林靖雄 編輯, 『經濟政策と中小企業』, 同友館, 1977.

〔圖 3〕 信用保證制度的 概略圖



의 對象範圍가 大企業에까지 擴大되고 政府出捐金(10億원)과 金融機關出捐金(貸出利子 收入額의 0.5% 相當額)을 財源으로 하는 信用保證基金이 各金融機關內에 設置·運用되게 되었다. 그 후 1976年 6月 새로운 「信用保證基金法」에 의거하여 現行과 같은 「信用保證基金」이 發足되어 信用保證業務를 擔當하게 되었다<sup>10)</sup>(圖 3 참조).

## 2. 信用保證運用 現況과 問題點

信用保證基金은 擔保能力이 부족한 企業이 金融機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資金을 融資받지 못할 경우에 該當企業의 經營能力과 事業性 등을 擔保로 하여 該當企業의 債務를 保證하여 줌으로써 企業의 資金融通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支援하여 주고 있다. 특히 信用保證基金法(施行令 第20條)은 擔保力이 微弱한 中小企業에 대하여 總保證額의 40% 이상을 優先 保證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1983~84年中에는 新規保證은 中小企業에 한하여 運用되었다.

信用保證基金이 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擔保能力이 미약한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을 우선적으로 推進함에 따라 總保證殘額中 中小企業保證이 차지하는 構成比는 1980年 이후 매년 크게 上昇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表 7 참조). 그 반면 主去來銀行 與信管理對象企業 및 海外建設業體 등에 대한 新規保證의 抑制, 既支援된 保證의 回收 등 大企業에 대한 保證支援의 抑制로 인하여 大企業保證殘額은 1982年 이후 減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總保證殘額中 大企業保證이 차지하는 構成比도 1976年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示顯

10) 張韋相, 『信用保證』, 翰學社, 1980.

〈表 7〉 信用保證基金의 保證取扱 實績(殘額基準)

(단위: 億원, %)

	件 數						金 額					
	全 體		大 企 業		中 小 企 業		全 體		大 企 業		中 小 企 業	
	件 數	構成比	件 數	構成比	件 數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1 9 7 6	10,973	100.0	388	3.5	10,585	96.5	1,579	100.0	933	59.1	646	40.9
1 9 7 7	13,255 (20.8)	100.0	423 (9.0)	3.2	12,832 (21.2)	96.8	2,654 (68.1)	100.0	1,423 (52.5)	53.6	1,231 (90.6)	46.4
1 9 7 8	15,312 (15.5)	100.0	583 (37.8)	3.8	14,729 (14.8)	96.2	4,081 (53.8)	100.0	1,869 (31.3)	45.8	2,212 (79.7)	54.2
1 9 7 9	16,645 (8.7)	100.0	979 (67.9)	5.9	15,666 (6.4)	94.1	7,008 (71.7)	100.0	3,028 (62.0)	43.2	3,980 (79.9)	56.8
1 9 8 0	23,662 (42.2)	100.0	1,591 (62.5)	6.7	22,071 (40.5)	93.3	12,552 (79.1)	100.0	5,254 (72.9)	41.9	7,298 (83.4)	58.1
1 9 8 1	27,386 (15.7)	100.0	1,261 (-20.8)	4.6	26,125 (18.7)	95.4	15,442 (23.0)	100.0	5,695 (8.4)	36.9	9,747 (33.6)	63.1
1 9 8 2	27,942 (2.0)	100.0	796 (-36.9)	2.8	27,146 (3.9)	97.2	13,576 (-12.1)	100.0	3,546 (-37.7)	26.1	10,030 (2.9)	73.9
1 9 8 3	26,015 (-6.9)	100.0	534 (-32.1)	2.1	25,481 (-6.2)	97.9	13,102 (-3.5)	100.0	2,411 (-32.0)	18.4	10,691 (6.6)	81.6
1 9 8 4	27,113 (4.2)	100.0	479 (-10.3)	1.8	26,634 (4.5)	98.2	15,500 (18.3)	100.0	1,896 (-21.4)	12.2	13,604 (27.2)	87.8
年 平 均 增 加 率		12.8		9.6		13.0		37.3		17.0		50.5

註: ( )안은 前年對比 增加率임.

資料: 信用保證基金

〈表 8〉 信用保證基金의 保證承諾 推移

(단위: 件, 億원)

	中 小 企 業		大 企 業		全 體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1 9 7 6	6,638	539	186	577	6,824	1,116
1 9 7 7	12,887 (94.1)	1,571 (191.5)	339 (82.3)	1,158 (100.7)	13,226 (93.8)	2,729 (144.5)
1 9 7 8	13,648 (5.8)	2,430 (54.7)	654 (92.9)	1,259 (8.7)	14,302 (8.1)	3,689 (35.2)
1 9 7 9	15,401 (12.9)	4,398 (81.0)	1,282 (96.0)	2,391 (89.9)	16,683 (16.6)	6,789 (84.0)
1 9 8 0	30,823 (100.1)	9,807 (123.0)	4,115 (221.0)	7,804 (226.4)	34,938 (109.4)	17,611 (159.4)
1 9 8 1	36,208 (17.5)	13,089 (33.5)	2,648 (-35.7)	5,327 (-31.7)	38,856 (11.2)	18,416 (4.6)
1 9 8 2	33,433 (-7.7)	12,645 (-3.4)	1,016 (-61.6)	2,846 (-46.6)	34,449 (-11.3)	15,491 (-15.9)
1 9 8 3	31,212 (-6.6)	12,901 (2.0)	545 (-46.4)	959 (-66.3)	31,757 (-7.8)	13,860 (-10.5)
1 9 8 4	31,184 (-0.1)	15,241 (18.1)	429 (-21.3)	1,250 (30.3)	31,613 (-0.5)	16,491 (19.0)

註: ( )안은 前年比 增加率임.

資料: 信用保證基金

하고 있다. 1984年末 현재 總保證殘額は 1兆 5,500億원에 달하며 그 構成比를 보면 中小企業保證이 87.8%, 大企業保證이 12.2%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이제 信用保證制度가 中小企業爲主로 運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 信用保證活用度

1979年の 第2次 石油波動을 계기로 한 景氣의 沈滯는 國民經濟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

을 끼쳤지만 특히 企業體質이 약한 中小企業들은 企業存立 그 자체가 심각한 狀況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은 中小企業金融의 一面인 信用保證에 있어서도 여실히 나타났는바 石油危機와 10.26 事態 등의 不安要因 등으로 인하여 景氣가 後退하였던 1979年과 1980年の 保證承諾額은 前年比 각각 84.0% 및 159.4% 라는 높은 增加를 示顯하였다(表 8 참조). 1件當 平均 保證承諾額 또한 1976年 이후 꾸준히

〈表 9〉 韓·日保證承諾實績比較

	韓 國				日 本			
	保 證 承 諾				保 證 承 諾			
	件 數	金 額 (億圓)	前年比增 加率(%)	1件當 平均金額 (百萬圓)	件 數	金 額 (億圓)	前年比增 加率(%)	1件當 平均金額 (百萬圓)
1 9 7 6	6,824	1,116		16.4	1,047,092	39,015	8.6	3.7
1 9 7 7	13,226	2,729	144.6	20.6	1,076,687	42,751	9.6	4.0
1 9 7 8	14,302	3,689	35.2	25.8	1,000,132	42,320	△1.0	4.2
1 9 7 9	16,683	6,788	84.0	40.7	967,797	43,192	2.1	4.5
1 9 8 0	34,938	17,611	159.4	50.4	1,046,684	52,030	20.5	5.0
1 9 8 1	38,856	18,416	4.6	47.4	1,030,320	52,348	0.6	5.1
1 9 8 2	34,449	15,490	△15.9	45.0	1,003,353	53,248	1.7	5.3
1 9 8 3	31,757	13,860	△10.5	43.6	988,249	54,023	1.5	5.5
1 9 8 4	31,613	16,491	19.0	52.2	985,883	57,124	5.7	5.8

資料：信用保證基金, 『保證月報』, 1985. 9.

〈表 10〉 信用保證 活用度の 推移

	信用保證基金		預 金 銀 行		信用保證活用度(%) <sup>2)</sup>	
	總保證殘額 (1)	中小企業保 證殘額 (2)	總 貸 出 (3)	中小企業 貸出(4) <sup>1)</sup>	(1)/(3)	(2)/(4)
1 9 7 6	1,579	646	37,249	9,759	4.24	6.62
1 9 7 7	2,654	1,231	47,090	13,370	5.64	9.21
1 9 7 8	4,081	2,212	66,090	18,482	6.17	11.97
1 9 7 9	7,008	3,980	89,778	26,994	7.81	14.74
1 9 8 0	12,552	7,298	122,044	37,052	10.28	19.70
1 9 8 1	15,442	9,747	159,550	51,335	9.68	18.99
1 9 8 2	13,576	10,030	202,258	64,059	6.71	15.66
1 9 8 3	13,102	10,691	241,553	79,499	5.42	13.45
1 9 8 4	15,500	13,604	279,789	94,112	5.54	14.46

註：1) 市中銀行, 地方銀行, 國民銀行, 中小企業銀行, 外換銀行, 新韓銀行, 韓美銀行이 포함된다.

2) 金額 活用度 =  $\frac{\text{保證債務殘額}}{\text{中小企業에 대한 貸出額}}$

資料：韓國銀行, 『通貨金融統計』, 1984.

信用保證基金, 『保證月報』, 1985. 9.

증대되어 1984年中에는 52.2百萬원에 달하였으며 이로써 日本에서의 1件當 平均 保證承諾額 5.3百萬「엔」을 크게 上廻하고 있다(表 9 참조).

이와 같은 信用保證의 급격한 增大에 따라 預金銀行의 總貸出에 있어서의 信用保證活用度, 즉 總貸出金에 대한 信用保證基金의 總保證額의 比率은 1980年末에 10.28%를 기록하였으나 1980年 이후 信用保證基金의 保證財源인 基本財産의 制約과 保守的인 信用保證의 運用이 基因하여 1983年末에는 5.42%로 크게 下落하였으며 1984年末에는 5.54%로 前年과 비슷한 수준을 維持하였다(表 10 참조).

한편 預金銀行의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에 있어서의 信用保證活用度는 中小企業에 대한 우선적인 信用保證支援에 따라 總貸出에 있어서

의 信用保證活用度を 크게 上廻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中小企業貸出에 있어서 信用保證活用度(金額基準)는 1976年の 6.62%에서 1980년에는 19.7%로 급격히 높아졌으나 1980年 이후 保守的인 信用保證의 運用에 따라 다소 낮아져 1984년에는 14.46%를 記錄하였다.

中小企業貸出에 있어서의 信用保證活用度를 金融機關別로 살펴보면(表 11 참조) 1984年末 現在 中小企業銀行과 國民銀行은 각각 11.3% 및 17.9%에 달하였으나 7個 市中銀行과 地方銀行은 각각 8.0% 및 7.4%에 그쳐 市中銀行과 地方銀行의 中小企業貸出에 있어서 信用保證의 活用이 中小企業銀行과 國民銀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低調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信用保證制度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市中銀行과 地方銀行의 貸出에 있어서의 信用

〈表 11〉 金融機關別 信用保證活用狀況<sup>1)</sup>(1984年末)

(단위: 億원, %)

	總貸出金 (A)	總保證額 (B)	活用度 (B)/(A)	中小企業 貸出金 (C)	中小企業 保 證 (D)	活用度 (D)/(C)
中小企業銀行	23,623	2,555	10.8	22,552	2,549	11.3
國民銀行	25,282	1,880	7.4	10,509	1,878	17.9
市中銀行 <sup>2)</sup>	120,709	3,971	3.3	41,130	3,303	8.0
地方銀行	24,197	1,133	4.7	14,717	1,083	7.4
計	193,811	9,539	4.9	88,908	8,813	9.9

註: 1) 殘額基準임.

2) 市中銀行에는 한미은행과 신한은행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信用保證基金.

중소기업은행, 『연차보고서』, 1985.

〈表 12〉 銀行의 擔保條件別 融資額 構成比(製造業)

(단위: %)

	不動産	動 産	支給保證	信用保證 基 金	信 用
製 造 業	79.7	2.3	4.1	3.7	10.2
5 ~ 9人	85.8	1.5	0.4	1.1	11.2
10 ~ 19人	88.7	1.8	3.5	3.8	2.2
20 ~ 49人	76.8	2.2	8.9	2.7	9.4
50 ~ 99人	76.9	2.8	1.2	5.0	14.1

資料: 국민은행, 『소규모 기업실태조사보고서』, 1984, p.212.

·保證活用도를 보다 提高하는 것이 緊要하다 하겠다.

한편 從業員 5人以上 100人未滿의 小規模企業(製造業部門)을 대상으로 한 預金銀行의 擔保條件別 融資額의 構成比 調査에 의하면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不動產擔保貸出이 79.7%를 차지하여 大宗을 이루고 있는 반면 信用貸出과 信用保證基金의 信用保證을 이용한 銀行貸出은 각각 10.2% 및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中小企業中에서도 小規模企業 또는 中小零細企業에 있어서는 아직도 信用保證의 活用이 低調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信用保證制度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속한 量的成長을 이룩하였으나 우리나라의 1件當 平均 保證承諾額이 日本의 경우 보다 훨씬 큰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信用保證은 이제까지 中小企業 중에서도 小規模企業보다는 中規模企業 爲主로 運用되어 온 것같이 보인다. 全體 信用保證의 約 70%가 小規模企業에 保證되고 있는 日本에서는 中小企業者의 約 33.5% (1984年 現在)가 信用保證制度를 活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小規模企業의 信用保證活用이 매우 低調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小規模企業에 대한 信用保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나. 信用保證基金의 基本財産 造成

信用保證基金은 無資本公益法人이므로 基金의 信用保證引受能力을 나타내는 指標는 基金

의 基本財産이다. 따라서 基金의 基本財産은 株式會社의 自己資本에 해당되며 代位辨濟를 위한 準備金的인 性格과 金融機關 등에 대한 保證債務의 最終擔保로서의 性格도 지니고 있다. 현재 信用保證基金이 保證할 수 있는 總保證限度는 基本財産과 移越利益金의 合計金額의 15倍 이내로 限定되어 있다.

基本財産의 造成은 政府의 出捐金, 金融機關의 出捐金 및 企業의 出捐金에 의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며(信用保證基金法 第 6條) 특히 金融機關은 그 貸出金의 0.5%(1980年 이후 1990년까지는 0.3%)를 基金에 出捐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基金의 基本財産은 1976年 信用保證基金의 設立 이후 거의 전적으로 金融機關의 出捐金에 의존하여 왔으며 信用保證基金法 施行後 이제까지 2次에 걸쳐 金融機關의 出捐期限을 延長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1982年末 현재에는 金融機關出捐금이 總出捐金의 98.7%를 차지하게 되었다(表 13 참조).

信用保證基金에 대한 金融機關의 出捐이 金融機關의 貸出에 따르는 損失을 補填하기 위한 相互共濟的, 相互保險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外國에 비하여 金融機關의 負擔率이 높다고 할 수 있다. 自由中國의 中小企業 信用保證基金의 경우에는 1983年 6月末 現在 政府 및 公共機關의 出捐금이 약 9億NT「달러」, 金融機關의 出捐금이 약 3億NT「달러」로 政府 및 公共機關이 總出捐金의 75%를 그리고 金融機關은 25%를 각각 負擔하고 있는 實情이다<sup>11)</sup>. 그리고 日本의 경우에는 1984年末 現在 信用保證協會에 대한 出捐金의 65%는 地方公共團體로부터의 出捐으로 調達되고 있으며 金融機關의 出捐과 負擔金은 전체의

11) 韓國銀行, 「우리나라와 主要企業의 中小企業支援制度」, 『調査統計月報』, 第38卷, 1984. 8.



34%를, 그리고 業者團體의 出捐金은 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sup>12)</sup>(表 14 참조).

1979~80年中 國內景氣의 沈滯로 인하여 많은 企業이 倒産함에 따라 基金의 代位辨濟가 급격히 증가하여 信用保證을 위한 財源의 擴充을 크게 阻害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企業에 대한 信用保證의 擴大供給도 곤란하게 되었다(表 15 참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政策當局은 基金의 基本財産을 擴充하기 위하여 金融機關의 出捐期限을 1985年 12月 31日에서 1990年 12月 31日까지 延長하였으며 政府도

1982年과 1983年에 250億원과 150億원을 각각 信用保證基金에 出捐하였다. 이에 따라 政府의 出捐金이 總出捐金中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82年末의 1.3%에서 1984年末에는 12.5%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信用保證基金에 대한 政府의 出捐은 外國에 비하여 低調한 실정이다. 한편 信用保證法에 規定된 基本財産의 造成을 위한 企業의 出捐金은 이제까지 全無한 실정이라서 앞으로 企業 또는 經濟團體의 出捐이 기대되고 있다.

〈表 13〉 信用保證基金의 基本財産 및 信用保證運用倍數 推移

(단위: 億원, %)

	1976		1977		1978		1979		1980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 出捐金	353	100.0	494 (39.9)	100.0	670 (35.6)	100.0	907 (35.4)	100.0	1,116 (23.0)	100.0
{ 政府	24	6.8	24	4.9	24	3.6	24	2.6	24	2.2
{ 金融機關	329	93.2	470	95.1	646	96.4	883	97.4	1,092	97.8
2. 移越利益金	74		116		166		213		230	
3. 合計	427		610 (42.9)		836 (37.0)		1,120 (34.0)		1,346 (20.2)	
4. 信用保證總額 (殘額)	1,579		2,654		4,081		7,008		12,552	
5. 運用倍數 (4)/(3)	3.70		4.35		4.88		6.26		9.33	

	1981		1982		1983		1984		平均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 出捐金	1,391 (24.6)	100.0	1,813 (30.3)	100.0	2,606 (43.7)	100.0	3,394 (30.2)	100.0	(32.8)
{ 政府	24	1.7	24	1.3	274	10.5	424	12.5	
{ 金融機關	1,367	98.3	1,789	98.7	2,332	89.5	2,970	87.5	
2. 移越利益金	△15		△690		△990		△1,405		
3. 合計	1,376 (2.2)		1,123 (-18.4)		1,616 (43.9)		1,989 (23.1)		(23.1)
4. 信用保證總額 (殘額)	15,442		13,576		13,102		15,500		
5. 運用倍數 (4)/(3)	11.22		12.09		8.11		7.79		

註: 1) ( )안은 前年比 增加率임.

資料: 信用保證基金

12) 信用保證基金, 「日本信用保證制度의 現況」, 『保證月報』, 1985. 9.

〈表 14〉 日本信用保證協會의 基本財産 및 出捐金 推移

(단위 : 億圓, %)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 基本財産	1,793	2,076	2,445	2,782	3,129	3,491	3,879
基金	812	897	971	1,047	1,123	1,200	1,293
基金準備金	981	1,179	1,474	1,735	2,006	2,291	2,586
2. 出捐金計	811	897	971	1,047	1,123	1,200	1,293
地方公共團體	540 66.6	590 65.8	631 65.0	675 64.5	723 64.4	777 64.8	842 65.1
金融機關 <sup>1)</sup>	263 32.4	299 33.3	332 34.2	364 34.8	392 34.9	415 34.6	443 34.3
業者團體	8 1.0	8 0.9	8 0.8	8 0.8	8 0.7	8 0.7	8 0.6
合計(1)+(2)	2,604	2,973	3,416	3,829	4,252	4,691	5,172

註: 1) 負擔金이 포함되었음.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月報』, 第57號, 1985. 9.

〈表 15〉 信用保證基金의 代位辨濟 推移

(단위 : 百萬圓, 件, %)

		1976		1977		1978		1979		1980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中小企業	件數	80	100.0	68	98.6	79	96.3	132	89.2	272	91.3
	金額	554	100.0	1,079	97.5	1,924	92.3	6,092	77.3	18,421	76.2
大企業	件數	—	—	1	1.4	3	3.7	16	10.8	26	8.7
	金額	—	—	28	2.5	161	7.7	1,793	22.7	5,757	23.8
合計	1) 件數	80	100.0	69	100.0	82	100.0	148	100.0	298	100.0
	2) 金額	554	100.0	1,107 (99.8)	100.0	2,085 (88.3)	100.0	7,885 (278.2)	100.0	24,178 (206.6)	100.0
	3) 平均代位辨濟金額 <sup>2)/1)</sup>	6.9		16.0		25.4		53.3		81.1	
	4) 信用保證殘額	157,909		265,444 (68.1)		408,126 (53.8)		700,788 (71.7)		1,255,235 (79.1)	
	5) 代位辨濟率 %, 2)/4)	0.35		0.42		0.51		1.13		1.93	

		1981		1982		1983		1984		計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中小企業	件數	732	94.5	1,085	97.1	1,503	98.4	1,571	98.4	5,522	97.0
	金額	49,843	80.0	94,988	78.7	68,159	92.0	82,135	90.3	323,195	84.2
大企業	件數	43	5.5	32	2.9	25	1.6	26	1.6	172	3.0
	金額	12,423	20.2	25,774	21.3	5,960	8.0	8,853	9.7	60,749	15.8
合計	1) 件數	775	100.0	1,117	100.0	1,528	100.0	1,597	100.0	5,694	100.0
	2) 金額	62,266 (157.5)	100.0	120,762 (93.9)	100.0	74,119 (-38.6)	100.0	90,988 (22.8)	100.0	383,944	100.0
	3) 平均代位辨濟金額 <sup>2)/1)</sup>	80.3		108.1		48.5		57.0		67.4	
	4) 信用保證殘額	1,544,233 (23.0)		1,357,618 (-12.1)		1,310,218 (-3.5)		1,549,950 (18.3)			
	5) 代位辨濟率 %, 2)/4)	4.03		8.90		5.66		5.87			

註: ( ) 안의 숫자는 前年對比 增加率임.

資料: 信用保證基金

한편 信用保證基金은 保證受惠企業으로부터 保證의 種類에 관계없이 保證金額에 대하여 年 1.5%이내의 保證料를 받고 있으나 中小企業에 대한 保證에 있어서는 中小企業을 育成 支援한다는 趣旨에서 年 1.0% 이내의 保證料率을 優先適用토록 規定되어 있다(信用保證基本法 第33條). 원래 保證料는 信用保證基金의 所要經費를 充當하고 信用保證債務에 대한 代位辨濟에 따르는 損失補填의 일부에 充당하기 위하여 保證申請企業으로부터 信用保證의 代價로서 徵求되는 것이다. <表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信用保證基金의 保證料收入은 1976~78年 中에는 代位辨濟金額을 초과하여 保證料收入에 의한 代位辨濟의 補填率은 148~159%에 달하였다. 그러나 1979年 이후 代位辨濟가 급증하여 保證料收入을 대폭 上廻함으로써 同補填率은 급격히 下落하는 추세를 보여 1984년에는 14.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同期間中 保證承諾金額에 대한 保證料收入의 比率, 즉 實質的인 保證料率은 0.52~0.87%의 범위 내에서 머물러 있었으며, 특히 代位辨濟가 급증하였던 1979~81年의 期間中에 實質的인 保

證料率은 1978年보다 오히려 下落하였다.

#### 다. 代位辨濟

信用保證基金이 保證한 企業의 經營이 부실하여 金融機關에 대한 債務의 償還能力을 잃게 되면 信用保證基金은 債權者인 金融機關의 請求에 따라 金融機關의 義務履行狀況과 請求金額의 適正與否 등을 檢討하여 免責事項에 抵觸되지 않으면 保證人으로서의 保證債務를 履行, 즉 代位辨濟를 하게 된다. 1976年 이후 保證基金의 保證規模가 급속하게 擴大되어 왔으나 1979~80年의 景氣後退로 인하여 保證企業, 특히 企業體質이 약한 中小企業의 倒産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信用保證基金의 代位辨濟는 1979년에 79億원, 1980년에 242億원, 1981년에 623億원 그리고 1982년에는 1,208億원으로 잇달아 크게 늘어났으며 1983年 이후에야 그 規模가 다소 縮小되었다. 결국 1976~84年中 代位辨濟는 무려 年平均 113.6%나 증가하여 同期間中 保證殘額의 年平均增加率 37.3%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代位辨濟率, 즉 信用保證基金의 保證殘額에 대한 代

<表 16> 信用保證基金의 保證料收入 推移

(단위: 億원, %)

	保證承諾金額 (1)	保證料收入 (2)	實質保證料率 (2)/(1)	代位辨濟金額 (3)	補填率 (2)/(3)
1 9 7 6	1,116	8.0	0.72	5.5	145.5
1 9 7 7	2,729	17.6	0.64	11.1	158.6
1 9 7 8	3,689	31.1	0.84	20.9	148.8
1 9 7 9	6,788	49.8	0.73	78.9	63.1
1 9 8 0	17,611	92.3	0.52	241.8	38.2
1 9 8 1	18,416	134.4	0.73	622.7	21.6
1 9 8 2	15,490	135.0	0.87	1,207.6	11.2
1 9 8 3	13,860	120.5	0.87	741.2	16.3
1 9 8 4	16,491	130.7	0.79	909.9	14.4
計	96,190	719.4	0.75	3,839.4	18.7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月報』, 1985. 5.

位辨濟額の比率은 1976~78年中의 0.4~0.5%에서 1980년에 1.93%, 1981年 4.03%, 1982년에는 8.90%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1983~84년에는 5.7~5.9% 수준으로 下落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信用保證基金의 代位辨濟率은 1975~82年中 日本 全國信用保證協會의 代位辨濟率 1.5~2.8%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表 15 및 表 17 참조).

이와 같은 代位辨濟를 信用保證對象企業의 規模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信用保證基金은 1984年中에 該當金融機關에 대하여 모두 1,597件 910億원의 代位辨濟를 履行하였는바 그중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으로 인한 代位辨濟

가 1,571件 821億원으로 件數로는 전체의 98.4%를, 그리고 金額基準으로는 전체의 90.3%라고 하는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年間的 信用保證基金의 總代位辨濟(累計) 5,694件 3,839億원 중에서도 中小企業 信用保證에 따른 代位辨濟가 5,522件 3,232億원으로 件數로는 전체의 97%를, 金額으로는 전체의 8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한 信用保證基金의 保證取扱實績(表 7)과 代位辨濟에 관한 資料(表 15)를 이용하여 作成된 保證企業規模別 代位辨濟率의 推移(表 18)에 의하면 1984年中 中小企業 信用保證에

〈表 17〉 日本 全國信用保證協會의 概況

(단위: 億圓, %)

	基本財産	保證債務殘額	保證活用度(%)		代位辨濟		代位辨濟率	求償權回
			件數	金額	金額	增加率		
1975	1,140	44,353	31.8	5.8	660	60.6	1.49	82
1976	1,331	50,880	32.9	5.9	1,090	65.2	2.14	137
1977	1,623	55,530	34.2	5.4	1,496	37.2	2.69	182
1978	1,792	57,769	33.9	5.6	1,616	8.0	2.80	263
1979	2,077	61,530	32.0	5.7	1,633	1.1	2.65	304
1980	2,445	71,293	33.9	6.1	1,835	12.3	2.57	315
1981	2,782	76,355	35.2	6.0	1,987	8.3	2.60	361
1982	3,129	79,673	33.4	5.9	2,098	5.6	2.63	377
1983	3,491	82,189	33.3	5.6	2,147	2.3	2.61	..
1984	3,879	86,506	33.5	5.2	2,150	0.1	2.49	..

註: 1) 件數活用度 =  $\frac{\text{保證債務殘額件數}}{\text{中小企業者數}}$

2) 金額活用度 =  $\frac{\text{保證債務殘額}}{\text{中小企業에 대한 貸出殘}}$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月報』, 1985. 9.

日本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83. 8.

〈表 18〉 信用保證企業規模別 代位辨濟率의 推移(金額基準)

(단위: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中小企業	0.86	0.88	0.87	1.53	2.52	5.11	9.47	6.38	6.04
大企業	—	0.02	0.09	0.59	1.10	2.18	7.27	2.47	4.67
全體	0.35	0.42	0.51	1.13	1.93	4.03	8.90	5.66	5.87

대한 代位辨濟率은 6.04%로 大企業 信用保證에 대한 代位辨濟率 4.67%보다 1.37%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件當 平均 代位辨濟額은 1970年代末 이후 급증하여 1982년에는 108百萬원에 달하였으나 信用保證 基金이 1983年 이후 거의 전적으로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에 置重함에 따라 平均代位辨濟額은 1983년에는 49百萬원, 1984년에는 57百萬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信用保證基金의 保證承諾額 및 代位辨濟額의 增加는 市中金融機關이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에 소극적인 不況期에 信用保證을 통하여 中小企業의 원활한 金融을 圖謀한다는 使命을 信用保證制度가 수행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980年 이후 大規模의 代位辨濟로 인하여 信用保證基金의 基本財産의 擴大는 크게 制約받거나 減少하였으며 1982~83年中에는 保證의 減縮運用이 불가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 3. 信用保證과 中小企業貸出의 相關關係 分析

觀測期間中 主要 中小企業貸出銀行(市中銀行, 地方銀行, 中小企業銀行 및 國民銀行)의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에 관한 단순한 回歸分析의 결과로서 아래의 式들이 推定되었다. 觀測期間은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 및 信用保證에 관한 資料의 형성상 1976年 2/4分期에서 1984年 4/4分期까지 35分期로 하였으며 推定에 사용된 資料는 原系列을 「X-11 ARIMA」方式에 의하여 調整한 季節變動調整系列이다. 推定方式으로는 初期에 얻은 推定結果 가운데 系列相

關(serial correlation)이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2段階 Cochrane-Orcutt 反復推定法(Iterative Technique)을 이용하였다.

〈表 19〉의 推定結果에 의하면 觀測期間中 對 中小企業 銀行貸出의 信用保證에 대한 彈力性은 信用保證承諾額을 說明變數로 사용한 경우에 0.04~0.07, 그리고 信用保證殘額을 說明變數로 사용한 경우에는 0.08~0.11範圍의 값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中小企業에 대한 銀行貸出財源이 되는 預金(資料形便上 預金銀行의 預金資料를 이용하였음)에 대한 對 中小企業 銀行貸出의 彈力性은 貯蓄性預金を 說明變數로 사용한 경우에 0.91~1.17, 總預金を 說明變數로 사용한 경우에는 1.07~1.19로 나타나고 있어 貸出財源이 되는 預金이 中小企業에 대한 銀行貸出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韓國銀行은 銀行이 자발적으로 中小企業 支援金融을 擴大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1982年 7月부터 中小企業에 대한 銀行貸出增加額의 一定比率만큼 當該銀行에 一般資金을 貸出하여 주는 中小企業貸出支援制度를 採擇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銀行에 대한 韓國銀行의 中小企業貸出支援이 미치는 效果를 把握하기 위하여 위의 式(10)과 式(11)에서 擬制變數(dummy variable)를 이용하였으며 式(12)와 式(13)에서는 中小企業貸出銀行의 對韓國銀行總借入金 또는 對韓國銀行 一般資金借入을 각각 說明變數로 이용하여 式을 推定하였다. 同推定結果에 의하면 對 中小企業 銀行貸出의 韓國銀行借入金에 대한 彈力性은 0.88~1.04로서 銀行에 대한 韓國銀行貸出金도 기대한 바와 같이 貸出財源의 擴充 등을 통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銀行貸出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推定結果는 결국 觀測期間中에 金利機能이 抑制되고 銀行의 中小企業貸出에 대하여 超過需要가 常存하는 金融市場에서 中小企業에 대한 銀行貸出은 預金 및 韓國銀行借入金 등 貸出財源의 擴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信用保證도 銀行의 中小企業貸出에 統計적으로 有意的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中小企業貸出에 대한 信用保證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아직 信用保證制度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한 점과 그 效果를 統計적으로 精確히 測定하기 힘든 信用保證의 屬性 등에 基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19〉 銀行의 中小企業貸出 및 信用保證에 관한 回歸方程式

(1) $\ln Y_t = 13.2253 + 0.0375 \ln GR_{1t}$ (43.98) (2.13)	$R^2=0.9991$	$D.W.=1.7382$
(2) $\ln Y_t = 0.1122T + 0.0457 \ln GR_{1t}$ (1048.27) (112.18)	$R^2=0.9989$	$D.W.=1.8064$
(3) $\ln Y_t = 0.1060T + 0.0965 \ln GR_{2t}$ (19.14) (2.48)	$R^2=0.9988$	$D.W.=2.0181$
(4) $\ln Y_t = -3.4801 + 1.1919 \ln D_{1t}$ (-6.94) (28.28)	$R^2=0.9983$	$D.W.=1.6775$
(5) $\ln Y_t = -1.6219 + 0.9962 \ln D_{2t}$ (-1.62) (26.84)	$R^2=0.9992$	$D.W.=2.1593$
(6) $\ln Y_t = -3.3298 + 1.1640 \ln D_{1t} + 0.0237 \ln GR_{1t}$ (-6.62) (21.87) (0.81)	$R^2=0.9984$	$D.W.=1.8011$
(7) $\ln Y_t = -2.9009 + 1.1326 \ln D_{2t} + 0.0737 \ln GR_{1t}$ (-4.10) (16.80) (2.5)	$R^2=0.9982$	$D.W.=2.0686$
(8) $\ln Y_t = -2.3409 + 1.0500 \ln D_{2t} + 0.1092 \ln GR_{2t}$ (-2.45) (8.72) (1.56)	$R^2=0.9979$	$D.W.=1.8829$
(9) $\ln Y_t = -2.7931 + 1.0736 \ln D_{1t} + 0.0821 \ln GR_{2t}$ (-4.01) (11.41) (1.40)	$R^2=0.9984$	$D.W.=1.7089$
(10) $\ln Y_t = -2.7436 + 1.1661 \ln D_{2t} + 0.0692 DUM_t$ (-5.03) (24.22) (12.06)	$R^2=0.9981$	$D.W.=2.0545$
(11) $\ln Y_t = 0.9078 \ln D_{2t} + 0.0622 \ln GR_{1t} + 0.0569 DUM_t$ (39.66) (2.50) (2.00)	$R^2=0.9986$	$D.W.=2.0975$
(12) $\ln Y_t = 0.2984 + 1.0438 \ln CL_{1t}$ (1.96) (66.27)	$R^2=0.9951$	$D.W.=2.1840$
(13) $\ln Y_t = 3.0492 + 0.8763 \ln CL_{2t}$ (5.11) (12.91)	$R^2=0.9012$	$D.W.=1.8963$

Y : 中小企業에 대한 銀行貸出殘額

GR<sub>1</sub> : 信用保證基金의 保證承諾金額

GR<sub>2</sub> : 信用保證基金의 保證殘額

D<sub>1</sub> : 預金銀行의 總預金(殘額)

D<sub>2</sub> : 預金銀行의 貯蓄性預金(殘額)

CL<sub>1</sub> : 對韓國銀行 借入金

CL<sub>2</sub> : 對韓國銀行 一般資金借入(預金銀行分)

T : Time

DUM: 擬制變數(dummy variable) 1982 3/4~1984 4/4는 1, 나머지는 0

( )內는 t-統計值

## Ⅳ.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中小企業의 資金調達構造와 中小企業金融의 行態 및 信用保證制度運營上の 問題點 등을 考察하였다.

앞으로 經濟發展過程에 따르는 產業構造의 變化에 대한 對應과 國際競爭力의 강화를 위해서 技術集約인 研究開發型 中小企業을 비롯한 適應力과 創造力이 강한 中小企業의 振興이 絶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經濟政策目標의 推進過程에서 中小企業金融과 信用保證에 대한 需要의 增加 및 多樣化가 예상되는바 앞에서 살펴본 問題點을 克服하고 이에 效率的으로 대처하기 위한 中小企業金融의 앞으로의 發展方向을 提示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대체로 企業의 產業 또는 經濟活動을 政策當局이 意圖하는 方向으로 움직이게 하는 方策으로는 각종 政策手段에 의하여 強制 또는 誘導하여 가는 方法과 經濟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提供하여 政策當局이 원하는 方向으로 향하도록 해가는 方法이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通貨政策當局의 中小企業을 支援하기 위한 選別的 金融政策은 그 運用에 있어서 一般商業金融機關에 대하여 政策當局이 결정한 義務貸出比率를 賦課하여 이를 遵守토록 하는 등 前者의 方法에 많이 의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金融의 自律化가 推進되는 過程에서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을 보다 效率的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經濟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賦與함으로써 一般商業金融機關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相互競爭的으로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에 參與하도록 하는 方法에 政策의 重點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특히 信用力, 擔保力 및 償還能力 등의 脆弱으로 資金調達能力이 약한 小規模企業과 零細企業에 대한 資金의 利用可能性을 極大化함으로써 그들이 당면하는 金融難을 解消트록 하기 위해서는 貸出의 零細性 등으로 인하여 貸出에 따르는 去來費用(transaction cost)이 높은 少額貸出에 대한 貸出金利를 部分的으로 自由化하거나 또는 충분한 預貸「마진」이 保障되도록 貸出金利의 上限을 調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金融機關들의 不實債權은 그동안 크게 늘어나 個別銀行은 自己資本의 數倍에 달하는 不實債權을 保有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당한 量의 金融資金이 不實企業의 資金難을 緩和하기 위하여 支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健實한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制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플레이션의 再發없이 한정된 金融資金이 中小企業分野를 비롯한 經濟 各部門에 效率的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金融產業의 發展이 시급한 課題이며 그 前提로서 막대한 銀行의 不實債權을 정리하여 銀行의 自立成長基盤을 造成하는 것이 急先務라고 하겠다. 또한 金融產業의 育成을 통하여 원활한 中小企業金融의 擴大를 圖謀하기 위해서는 銀行의 責任經營體制를 確立하는 한편 貸出審査專門家의 養成과 權限의 強化를 통하여 金融機關自體의 信用分析機能과 權限을 提高할 필요가 있다.

3. 中小企業金融機關과 中小企業과는 規模의 對應의 原理가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健全한 相互信用金庫와 信用協同組合을 小規模企業 내지 零細企業에 대한 金融을 專門으로 하는 한편 連帶성과 親密感을 통하여 地域社會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地域金融機關으로 發展할 수 있도록 育成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指導와 監督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品質改善, 原價切減, 生産能率의 向上 등 中小企業의 近代化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長期設備資金이 보다 擴大 供給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中小企業金融債券의 逆마진 運用의 解消 등을 비롯한 安定的인 長期財源의 確保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리스會社 특히 新設된 中小企業 리스專擔會社와 地方리스會社의 育成을 통하여 地方中小企業의 設備近代化를 促進하고 金融機關이 保有하고 있는 固定化 資産 중 工場과 施設 등을 리스會社를 통하여 中小企業에 貸與토록 함으로써 固定化資産의 效率의인 이용을 圖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中小企業의 自己資本 充實化 특히 株式資本의 調達을 促進하기 위하여 中小企業에 대하여 계속 장기적으로 資本과 長期資金을 직접 供給하고 中小企業이 證券市場에서 獨自的으로 資本을 調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中小企業에 대하여 經營, 技術上의 「컨설팅」도 행하는 中小企業投資育成會社(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를 設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우리나라 企業의 內部金融에 의한 資金調達能力이 脆弱하므로 이를 提高하기 위하여 中

小企業에 대한 紙上配當稅制度의 改善 등 企業의 社內貯蓄과 減價償却充當金の 擴大를 誘導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補強하고 企業의 過度한 準租稅負擔을 輕減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7. 中小企業에 있어서 資本市場을 통한 資金調達이 아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바 中小企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企業의 公開 및 上場要件을 完화하여 유망한 中堅企業 및 中小企業의 資本市場接近이 용이하도록 環境을 造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中小企業의 會社債發行을 促進하기 위하여 社債發行要件을 企業의 規模中心에서 企業의 經營狀態와 事業性 등을 綜合的으로 감안하는 방향으로 改善, 補完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社債發行金利가 市場의 實勢金利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부분적으로 自由化하거나 彈力的으로 調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8. 地方經濟의 活性化와 均衡의 發展을 圖謀하는 데 큰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 地方의 資金難을 解消하기 위하여 地方 大都市에 保險會社와 投資信託會社를 新設함으로써 地方資金이 서울로 流出 集中되는 것을 防止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地域의 自主性 및 地域의 特性을 존중하고 地域의 실정에 적합한 대책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地域經濟 및 金融의 情勢變化에 신속하게 對應할 수 있는 면밀한 金融政策의 遂行을 支援하기 위하여 韓國銀行 支店들의 機能과 역할을 擴大·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中小企業團體活動의 充實, 強化를 꾀하고 地方産業振興對策의 實施 등 地域에 密着된 施策의 積極的인 推進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支



援하기 위하여 各道와 市 등 地方政府의 經濟의 機能을 擴充·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현재 中小企業者團體인 協同組合의 役割과 機能이 脆弱한데 融資規模의 小規模性, 個別中小企業의 信用度 低位 등에 基因한 中小企業의 不利性을 補完하기 위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에 있어서 推薦 등을 통한 協同組合의 參與를 誘導하여 中小企業金融의 效率的인 推進과 運用을 圖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中小企業의 協同化事業 推進, 各種 情報提供體制의 導入 및 對外交渉에 있어서 中小企業者들의 자발적인 共同努力을 勸獎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제 과거와 같이 中小企業의 資金 調達難을 단순히 量的인 面에서 補完하는 것이 中小企業金融政策의 主目的이었던 時代는 지나가고 中小企業이 처한 經濟實情에 即應하는 세심하고 치밀한 施策을 講究함으로써 質的인 面에서의 金融隔差를 補完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金融政策도 質的인 轉換을 행할 必要性이 從來보다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한 政策의 推進過程에서 지금까지 論議된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施策의 效率化를 뒷받침하고 예상되는 中小企業의 信用保證에 대한 需要의 增大와 多樣化에 對處해 나가기 위한 信用保證制度의 發展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1. 信用保證需要의 增加와 多樣化에 對應하여 信用保證을 지속적으로 供與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과다한 代位辨濟를 長期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減縮시키는 方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1970年代 후반 이후 代位辨濟의 急増은 信用保證基金의 信用保證을 위한 財源의 擴充을 크게 阻害하는 한편 信用保證에 따른 높은 代位辨濟率은 1980年代에 들어서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供與를 萎縮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信用保證의 급속한 量的 擴大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信用調査 및 信用情報管理의 強化 등을 통하여 信用保證審査를 改善하는 한편 信用保證에 따르는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에 대처하는 方案을 講究함으로써 현재의 높은 代位辨濟率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2. 國民經濟의 次元에서 信用社會의 定着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中小企業들에 대하여 各級 有關機關을 통하여 自己信用의 管理에 관한 指導와 啓蒙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信用情報保有機關과 信用評價機關이 細帶強化를 통하여 相互補完의 業務領域을 擴充하고 信用情報管理의 電算化를 통하여 有關機關 相互間에 충실한 내용의 情報交換體制를 補強, 全國的인 汎金融機關信用情報網을 構築하는 것이 緊要하다.

· 中小零細企業에 대한 信用保證의 擴大가 바람직하다. 中小企業의 多層化를 위해서는 活力있고 創造性과 彈力性을 가진 中小零細企業의 新規進入과 건전한 發展이 緊要한데 기존의 擔保 및 保證人主義의 貸出로는 中小企業의 多層化와 新規進入은 매우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 信用保證制度는 최근에 이르러 中小企業 위주로 運用되어 오고 있으나 1件當 平均信用保證承諾額의 크기로 미루어 보아 아직도 小規模企業 내지 零細企業에 대한 信用保證供與는 低調한 實情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信用

保證制度가 그 本然의 目的을 충실히 達成하고 그 底邊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中小零細企業에 대한 少額保證制度의 活用 등을 통하여 小規模企業 내지 零細企業에 대한 信用保證을 擴大하여야 할 것이다.

4. 中小零細企業에 대한 貸出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相互信用金庫를 信用保證對象 金融機關에 포함하는 동시에 그에 필요한 財源을 擴大하기 위해서 相互信用金庫도 信用保證基金에 出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零細規模에서 오는 脆弱性을 補完해 주고 나아가 優良 相互信用金庫를 中小企業金融機關으로 育成·發展시키는데도 크게 寄與할 것으로 思料된다.

5. 80年代에 들어서 民間主導 및 市場經濟原理에 立脚하여 經濟各部門의 能率向上과 均衡을 追求하는 經濟產業政策의 一環으로서 產業構造調整과 開放經濟體制가 推進되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環境의 變化에 따른 中小企業의 金融難을 打開하기 위하여 經濟產業政策에 連繫되는 새로운 制度的인 信用保證을 開發·活用함으로써 中小企業이 經濟的 事情의 급격한 變化에 彈力的으로 대처하고 適應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동시에 經濟產業政策의 效率의인 目標達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① 技術開發에 따르는 危險을 分散하기 위한 新技術企業化 保證制度 ② 去來企業의 倒産 등에 의한 連鎖倒産을 防止하기 위한 倒産關聯 保證制度 ③ 構造的 不況業種에 従事하는 中小企業者의 원활한 事業轉換을 支援하기 위한 事業轉換 保證制度 및 ④ 地域經濟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企業이 構造的 不況의 影響을 받음에 따라 地域

全體가 不況에 빠지는 경우 그 特定地域內의 中小企業者가 필요로 하는 經營安定資金 등을 支援하기 위한 特定不況地域對策 保證制度 등을 導入 活用하는 것이 必要하다.

6. 信用保證基金의 基本財産을 擴充하기 위한 長期對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70年代末 이후 代位辨濟의 急増으로 인하여 信用保證基金의 移越利益금이 1981년에 赤字로 反轉한 이후 계속 그 赤字規模가 큰 폭으로 擴大되고 있다. 이에 對應하는 한편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多量의 信用保證需要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金融機關과 政府의 持續的인 出捐을 통하여 長期的으로 信用保證을 뒷받침할 財源을 꾸준히 擴充해 나가는 것이 必要하다. 또한 信用保證의 役割, 機能 및 運用現況 등을 再檢討하고 信用保證經營의 合理化를 推進하는 한편 信用保證의 將來進路 등에 관한 長期計劃을 樹立하고 對外信用의 維持 및 信用保證의 成長을 위한 施策등을 推進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7. 業種別 또는 地域別 經濟團體를 비롯한 民間의 主導에 의한 類似 信用保證制度의 導入 및 育成이 바람직하다. 스위스, 西獨 및 이탈리아 등 西歐諸國과 日本에서는 民間主導의 業種別 또는 地域別 信用保證機關에 의한 信用保證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中小企業共濟事業基金과 建設共濟組合 등이 組合員에게 貸出 또는 保證을 행하고 있는바 이들을 類似民間信用保證機關으로 發展하도록 育成하는 한편 相互扶助와 相互連帶의 精神에 立脚하여 業種別 또는 地域別 經濟團體와 保險會社 등 民間機關의 主導에 의하여 類似 信用保證機關들이 設立될 수 있도록 政策的인 誘因을

提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信用保證基金이 母企業의 推薦을 받아 受給企業인 中小企業에게 限度去來保證을 許容해 주는 信用保證連繫支援을 擴大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母企業과 受給企業의 自發的인 參與를 통한 이와 같은 信用保證支援은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원활한 相互協力關係를 構築하는데도 크게 寄與할 것이다.

## ▷ 參 考 文 獻 ◁

- 國民銀行, 『韓國의 小規模企業』, 1984.  
\_\_\_\_\_, 『소규모기업실태조사보고서』, 1984.  
金重雄, 『轉換期の 韓國經濟』, 東星社, 1985.  
朴松權, 「우리나라企業의 信用管理現況 調査分析」, 『保證月報』, 信用保證基金, 1984. 2.  
信用保證基金, 「日本信用保證制度의 現況」, 『保證月報』, 1985. 8, 9月號  
李敬儀, 『經濟發展과 中小企業金融의 效率化』, 韓國經濟研究中心, 1979.  
李滿基, 「第二金融圈의 中小企業金融支援方案」, 『中小企業研究論集』, 1984.  
趙觀行, 『現代中小企業論』, 에코노미아, 1984.  
張韋相, 『信用保證』, 翰學社, 1980.  
中小企業銀行, 「1983年度 日本의 中小企業育成施策」, 『企銀調査月報』, 1983. 1.  
中小企業振興公園, 『中小企業經濟指標』, 1984.  
中小企業銀行, 「中小企業金融의 實態와 問題點」, 『韓國의 中小企業』, 1983.  
崔英在, 「改正 信用保證基金法 解說」, 『保證月報』, 1984. 8.  
崔仁基, 「中小企業과 會社債發行」, 『中小企業研究論集』, 1983.  
韓國銀行, 「우리나라와 主要國의 中小企業支援制度」, 『조사통계월보』, 제38권, 1984. 8  
韓國銀行, 「臺灣의 中小企業支援制度」, 『週間內外經濟』, 1984. 12.  
\_\_\_\_\_,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금융제도」 『週間內外經濟』, 1984. 10.  
\_\_\_\_\_, 「中小企業共濟制度의 主要內容」 『週間內外經濟』, 1984. 6.  
\_\_\_\_\_, 『기업경영분석』, 1984.  
林健久, 「60年代は, 公的金融の大幅整理縮小の時代に」, 『金融ジャーナル』, 1984. 12.  
中小企業廳, 『中小企業信用補完制度』, 昭和53年.  
信晴・山本順一編, 『中小企業政策を見なおす』, 昭和58年  
谷田庄三, 『現代日本の銀行資本』, 1978.  
加藤誠一, 『經濟構造と中小企業』, 昭和56年.  
細野孝一, 『中小企業の金融問題』, 昭和43年.  
日本信用金庫協會, 『金融効率化と中小企業金融』, 昭和54年.  
加藤誠一・水野武・小林靖雄編集, 『經濟政策と中小企業』, 同友館, 1977.  
山下邦男, 「中小企業金融の方向と政策」, 『經濟政策と中小企業』, 同友會館, 1976.  
裙澤政司編, 『信用保證讀本』,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980.  
具塚啓明・小野寺弘夫, 「信用割当について」, 『經濟研究』, 第25卷第1号, 1974.  
岩田一政・洪田宏一, 『金融政策と銀行行動』, 東洋經濟新報社, 1980.  
Bach, G.L. and Huizenga,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ight Mone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1.  
Committee to Review the Function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Studies of Small Firms' Financing: Research Report No. 3,*

HMSO, 1979.

Jame Hatch, Larry Wynant and Mary Jane Grunt, "Federal Lending Programs For Small Business: No Longer Needed?" *Canadian Public Policy*, Sept. 1983.

Joel Fried, "Government Loan and Guarantee Program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December 1983.

Katrine Anderson Saito and Delano P. Villanueva, "Transaction Costs of Credit to the Small-Scale Sector in the Philippines", *World Bank Reprint Series: Number 226*,

April 1981.

Peter L. Struck and Lewis Mandel, "The Effect of Bank Deregulation on Small Business: A Note", *The Journal of Finance*, June 1983.

Silber, W.L. and M.L. Silber and M.E. Polakoff,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ight Money: An Econometric Study", *The Journal of Finance*, March 1970.

Tibor Scitovsky, "Economic Development in Taiwan and South Korea: 1965~81," *Food Research Institute Studies*, 1985.